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40호

공공주택(행복주택, 국민임대 등)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(청원오창 1BL)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1078(2017.1.4)호로 승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866(2021.06)호로 변경 고시한 청원오창 1BL 공공주택(행복주택, 국민임대)건설 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청원오창 1BL 공공주택(행복주택, 국민임대) 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

청원오창 1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

나. 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주택유형 변경 등)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(주택유형 : 행복주택+국민임대 → 통합공공임대)